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담당업무 등

채용유형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역	계약기간
계		5	-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건축)	1	·청사 건축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경기도 성남시	임용일 ~25.12.31.
	시설관리원(전기)	1	·청사 전기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청사미화원	1	·나라기록관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청원경찰 (육아휴직 대체)	2	·나라기록관 청사 방호 및 순찰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무효처리)

2. 근거 규정

-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지침」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3. 근무조건

□ 근무조건

○ (계약기간) 임용일 ~ '25.12.31.

* 청원경찰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시설관리원: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 청사미화원: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06:30~15:30, 점심시간 1시간)

- 청원경찰: 4조 2교대근무(주간-야간-비번-비번) 또는 주5일(40시간) 근무

* 교대근무시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 해당 분야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변경,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무 가능

○ (보수조건) 국가기록원 공무원 직무등급표상 기본급 및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제6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2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채용유형	채용분야	기본급 (2024년 월 지급액 기준)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건축)	2,067,680원	임용일~'25.12.31.
	시설관리원(전기)		
	청사미화원	1,914,530원	
	청원경찰 (육아휴직 대체)	1,877,000원 <small>(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1 호봉)</small>	

※ 법정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

○ (복지후생) 4대보험 가입 및 복지포인트 지급

○ (근무지역) 경기도 성남시

※ 보수 산정 시 군경력, 유사경력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청원경찰은 군경력(최대 2년)에 한하여 호봉 산정 시 포함.

※ 국가기록원 인사, 보수 지침 등의 제·개정 및 상황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4. 11. 25.(월) ~ 11. 29.(금)	'24. 12. 6.(금)	'24. 12. 12.(목)	'24. 12. 17.(화)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 나라일터: <https://gojobs.go.kr/>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개인이 제출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 회신 후 임용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1. 25.(월) 09:00 ~ 11. 29.(금) 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에 한함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및 방문접수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 ※ 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증' 표기(붙임 서식 활용)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51번길 30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204호) 공무원 채용담당자(우편번호: 13449)
 - ※ (유의사항)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 이후 도착서류는 미개봉 상태로 반송
 - ※ **접수(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예정(미통보 시 접수처에 확인)**

6-1.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일

- (응시연령)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 다만 청원경찰은 18세 이상인 사람(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이며,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6-2.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판단

□ 채용예정 직종별 자격요건

직급 (직종)	직무분야 (근무지역)	채용 인원	응시자격 요건	
합계		5		
기간제 근로자 (시설관리원, 청사미화원, 청원경찰)	건축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성남)	1	자격요건 (3개요건 중 1개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계열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에서 건축 계열의 직업훈련 이수자 • 건축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우대요건	•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건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전기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성남)	1	자격요건 (3개요건 중 1개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계열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전기 계열의 직업 훈련 이수자 • 전기시설설비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우대요건	• 공공기관에서 전기시설관리 6개월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청사 미화 (성남)	1	자격요건	• 해당 없음
			우대요건	• 1년 이상 환경미화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자
	청원경찰 육아휴직 대체 (성남)	2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 • 주간·야간·교대 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 동일 또는 유사직종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직종: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공무원, 방호 관련 공무원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사직종: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 소속), 방호·경비, 감시원 등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종 및 근무 기간별 차등 우대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응급구조사(1급, 2급) 소지자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각각 동일 종류의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하나를 인정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별첨]에 열거된 단체에 의해 발행된 단증에 한함

가. 경력자 우대

- 경력(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
 -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임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 해당 분야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시함**. 단,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 (해당경력 인정 여부는 우리기관 수행예정 업무를 고려하여 판단)
 -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기술직종 등),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한 후,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력만을 우대
- 청원경찰 지원자의 경우 직종 및 근무 기간별 차등 우대
 - 동일직종: 청원경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공무원, 방호 관련 공무원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사직종: 청원경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소속), 방호·경비, 감시원 등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직무관련 자격증 우대

- 청원경찰 지원자의 경우 자격증 복수 인정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각각 동일 종류의 자격증 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 ※ [별첨]에 기재된 단체에 한함

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관련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등

○ (가점사항) 서류전형(1차)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전형단계별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는 1개의 가점만 적용됨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을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라. 사회형평 가점

○ (대 상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사항) 서류전형(1차) 시 만점의 3%를 가산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전형단계별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8.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학위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또는 5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모집인원별로 아래와 같이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별 서류전형 합격인원]

모집인원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평가방식
1명	선발예정인원 5배수 이하	적격자 전원	자격요건 적부심사
2명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하		
1명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	5배수	자격요건 적부심사 + 세부평가
2명	선발예정인원 3배수 초과	3배수	

※ (순위결정 방법) 심사위원 2인이 평가한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각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평정 요소]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준법정신, 채용분야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조직 내의 리더십 및 협력자세와 친화력, 분야별 직무에 대한 적극적 업무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기본 소양

[평가 방식]

- 개별면접 혹은 집단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일정/장소: '24. 12. 12.(목) / 나라기록관 중회의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우선순위: 1. 취업지원대상자, 2. 서류전형 총 점수가 높은 자, 3. 경력이 많은 자 순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제출)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 ② 응시원서[채용 서식_(1)] 1부
- ③ 이력서[채용 서식_(2)] 1부
- ④ 자기소개서[채용 서식_(3)] 1부
- ⑤ 업무수행계획서[채용 서식_(4)] 1부 ※청사미화원 제외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채용 서식_(5) 또는 (5-1)] 1부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채용 서식_(6)] 1부
- ⑧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채용 서식_(7)] 1부
- ⑨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채용 서식_(8)] 1부
- ⑩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남성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본

○ (해당자 제출)

- ① 경력/자격증 우대: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② 취업지원 및 사회적 형평 가점 대상자: 관련 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주의사항 】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증빙 서류(경력, 학력, 자격 등)는 시험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해 인정(3개월 경과 발급본 불인정)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경력증명서에 지원 직종과 관련된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시간제),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4대 보험 가입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 제출받아 서류 진위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 예정
- 경력증명서와 추가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종합격공고 후에도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유의) 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격자 개별통지)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원하는 경우 청구 기간 동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나라기록관 팩스(031-750-2173), 담당자 이메일(iambum@korea.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4.12.18. ~ '25.1.2.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근무시간 내(09~18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 시설관리원·청사미화원 채용 담당자 ☎ 031-750-2182
- 청원경찰 채용 담당자 ☎ 031-750-2177

【별첨】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4. 1.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자격 상실되었으므로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4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담당자 기재

응시유형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간제 근로자	※시설관리원(건축), 시설관리원(전기), 청사미화원, 청원경찰 중 해당직종 선택			

제출 서류에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계 또는 클립으로 편철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미제출
< 공통 사항, 필수 제출 >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업무수행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8.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9. (남성)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 (경력) 경력 증명서 (부) ※ 해당 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만 제출		
2. (자격증) 자격증 사본 (부) ※ 해당 자격요건·우대요건을 증명하는 자격증(증명서) 사본 ※ 공인 무도단증의 경우 가장 단수가 높은 단증 1개만 제출		
3. (취업지원 및 사회적 형평 가점) 관련 증명서 (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주의사항》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워드 작성 (수기 작성 금지)**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 ◆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접수 후 채용담당자가 기재 후 별도 안내)**
- ◆ **응시 분야: 공고문의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를 기재**
 - ※ 시설관리원(건축), 시설관리원(전기), 청사미화원, 청원경찰 中 택1
- ◆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정확히 기재**
- ◆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 **학력사항: 졸업 외에 재학 · 수료 · 중퇴인 경우도 기재(동그라미 표시)**
- ◆ **기술자격: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 **경력사항: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해당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학력, 자격, 경력 등은 응시자가 이력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된 증빙 서류 (자격증 외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본)가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응시원서

본인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귀하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성명	
응시 유형	기간제근로자		
응시 분야		성별	복수국적 해당여부
생년월일년월일(만세)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자택)		휴대전화	

응시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응시 유형 (응시 분야)	기간제근로자 ()
성명		생년월일	
2024년 월 일 나라기록관장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부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면접)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채용 서식_(4)】 ※시설관리원, 청원경찰 지원자만 작성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업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전체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폰트 휴먼명조체, 크기 13P, 줄간격 170%

2024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등 기재사항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예 , 아니오

□ 경력사항·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자격증·경력사항 등 진위 여부 확인 및 국적, 신원 조회에 필요한 사항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정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예 , 아니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서명)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등 기재사항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주민등록번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범죄경력자료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예 , 아니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 및 임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채용시험 지원자로서,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받고자 합니다.

◇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본인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서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취소 및 해지됩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며 위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부패방지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4년 월 일

생년월일

지원자

(서명)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응시유형 / 응시분야
필수 기재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51번길 30 (시흥동 231)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204호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031-750-2182)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증]**

(우) 13449